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

의안 번호	1648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정이유

-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법인 정관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 ~ 제5조
-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6조 ~ 제15조
- 제3장 이사회 : 제16조 ~ 제22조
- 제4장 조직 : 제23조
-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24조 ~ 제29조
- 제6장 보칙 : 제30조 ~ 제37조
- 부칙 : 제1조 ~ 제3조

정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
2.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3. 생태공원 등 환경관련시설 수탁운영
4.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5.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7.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수익사업】

- ① 이 법인의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2인

제7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장
 2.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3. 상임이사

⑤ 감사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로 구분하여 당연직 감사는 시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 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환경부장관및 그소속청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관리·감독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당연직 이사인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⑦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 ① 법인의 직원은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복무】

법인의 임·직원은 별도 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직원 보수】

- ① 법인의 임·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법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 운영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구·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② 법인의 재원확보 기타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의 이해가 포함되는 경우

제22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

제23조 【조직】

- ① 법인의 조직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불임과 같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과실, 재단사업 수입 및 그 외의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수입과 지출】

- ①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사업,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결정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체상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9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후 경기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기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3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경기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안산시에 귀속된다.

제35조 【고시 및 공고】

법인이 고시 및 공고할 사항은 시의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칼음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불 임]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구 분	금 액	비 고
재단출연금 (현 금)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합 계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48
----------	------

제안년월일 : 2007. 12. 12.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상임이사의 자격을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공개모집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당연직 이사에 시의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며, 선임직 이사는 학계·경제계 및 기타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세부내용을 추가 수정하였음.

2. 주 요 골자

- 상임이사의 자격을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고, 당연직 이사에 시의회의 경제사회위원장은 추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선임직 이사는 학계·경제계 및 기타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세부내용을 추가하였음. (안 제7조).
- 임원의 임기에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추가함.(안 제9조)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이사의 자격은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로서 이해와 시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시의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⑤ 선임직 이사는 학계·경제계 및 기타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생략) ② <u>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u> ③ (생략)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p>	<p>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원안과 같음) ② <u>상임이사의 자격은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로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로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u> ③ (원안과 같음) ④ 1. ~ 3. (원안과 같음) 4. <u>시의회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u> ⑤ <u>선임직 이사는 학계·경제계 및 기타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u></p>
<p>제9조(임원의 임기) ① <u>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② ~ ③ (생략)</p>	<p>제9조(임원의 임기) ① <u>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② ~ ③ (원안과 같음)</p>